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6
----------	------

2025년 9월 1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종빈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 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객실·식음 및 시설관리 분야 전문 인력과 연수원 운영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건물면적 : 연면적 21,731 m^2 , 지하 2층 ~ 지상 6층, 4개동
- 부지면적 : 59,815 m^2 (대지 : 34,764 m^2 , 임야 : 25,051 m^2)
- 연수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5) 민간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35,430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26년 예산편성안)

○ 산출근거 : 충북형 생활임금,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최근 3년간 수안보
연수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 결산기준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 최초위탁(1차) : '08. 6. 1. ~ '11. 5. 31. (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 재 위 탁(2차) : '11. 6. 1. ~ '14. 5. 31. (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 재 위 탁(3차) : '14. 6. 1. ~ '17. 5.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위 탁(4차) : '17. 6. 1. ~ '19.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위 탁(5차) : '20. 1. 1. ~ '22.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계 약*(6차) : '23. 1. 1. ~ '25.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수의계약)

※ 코로나19 상황 직원만족도 제고 노력, 종합성과평가 우수사례 선정 등 고려하여 재계약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025년 12월 31일)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현황 〉

- 개 원 일 : 2008. 7. 11.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부지면적 : 59,815㎡(대지 34,764㎡, 임야 25,051㎡)
- 규 모 : 연면적 21,731㎡
(지하 2층 / 지상 6층, 4개동)
- 주요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연수편의시설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주)오브이룸스
- 수탁기간 : '23. 1. 1 ~ '25. 12. 31.(3년)
- 위탁비용 : 3,420백만원('25년 기준)



○ 객실현황 및 수용인원 : 총 110실 / 일 최대 729명 숙박 가능					○ 부대시설현황	
구분 (객실별 정원)	하늘관	솔숲관	객실수 총계	수용인원 (최대수용인원)	위치	시설현황
111.4m ² (정원 6인, 최대 9인)	-	3	3	27명	연수시설	대강당 1실(200석), 중강의실 2실(실당60석) 시청각실 1실(50석), 소회의실 5실(실당15석)
78.6m ² (정원 6인, 최대 9인)	30	-	30	270명	편의시설	편의점, PC방, 노래방, 온천탕, 노천탕, 야외수 영장, 북카페
53.4m ² (정원 4인, 최대 6인)	-	67	67	402명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풋살족구장, 산책로, 나누리광장
34.3m ² (정원 2인, 최대 3인)	10	-	10	30명	식음시설	대식당(150석), 카페테리아(66석), 셀프바비큐장
합계	40	70	110	729명	주차시설	164대 (지하 113대, 지상 47대, 대형버스 4대, 장애인 6대, 전기차 4)
					온천수 공급	온천탕, 노천탕, 야외수영장(1일 공급량 최대 100t)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수안보연수원은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2008년 6월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협약금액
최초위탁	3년 ('08.6.1.~'11.5.31.)	(주)HTC	공개모집	1,890백만원('08년)
재위탁(2차)	3년 ('11.6.1.~'14.5.31.)	(주)HTC	공개모집	2,051백만원('11년)
재위탁(3차)	3년 ('14.6.1.~'17.5.31.)	(주)오브이름스	공개모집	2,013백만원('14년)
재위탁(4차)	2년6개월 ('17.6.1.~'19.12.31.)	(주)오브이름스	공개모집	2,020백만원('17년)
재위탁(5차)	3년 ('20.1.1.~'22.12.31.)	(주)오브이름스	공개모집	2,236백만원('20년)*
재계약(6차)	3년 ('23.1.1.~'25.12.31.)	(주)오브이름스	재계약	3,217백만원('23년)

※ '21년까지 서울시로 편성되던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가 '22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반영되며 협약금액 증가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서울시는 수안보와 서천연수원은 민간위탁, 속초수련원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 경주, 통영, 여수, 양평, 강촌 등에 8개소는 임차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연수원 운영 현황 〉

□ 서울시 연수원 : 3개소, 341실

구 분	위 치	개원	객실수	운영형태	규모	부지면적
속초	속초시 미시령로	'97. 3. 15. ('09 리모델링)	80실	직영	지하2층, 지상8층(1동) (연면적 7,243㎡)	25,936㎡
서천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07. 6. 26.	151실 (단체 15실)	민간위탁	지하2층, 지상4층(4동) (연면적 18,925㎡)	97,684㎡
수안보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길	'08. 7. 11.	110실	민간위탁	지하2층, 지상6층(4동) (연면적 21,731㎡)	59,815㎡

□ 임차 연수원 : 8개소, 122실

구 분	위 치	임차개시 (준공일자)	객실수	운영형태	규모	부지면적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22. 4. 1. ('14.5월)	23실	임차	지하1층, 지상4층(3동) (연면적 3,682㎡)	13,323㎡
경주 코오롱호텔	경주시 불국로 289-17	'24. 4. 3. ('78.10월)	20실	임차	지하4층, 지상6층(1동) (연면적 8,090㎡)	238,116㎡
통영 마리나리조트	통영시 큰발개1길33	'24. 4. 3. ('95.3월)	15실	임차	지하1층, 지상15층(1동) (연면적 2,380㎡)	10,027㎡
통영 ES리조트	통영시 척포길 628-113	'24. 4. 3. ('09.5월)	10실	임차	지상2층(8동) (연면적 4,819㎡)	20,165㎡
여수 히든베이	여주시 신월로496-25	'25. 4. 1. ('12.6월)	10실	임차	지하2층, 지상10층(1동) (연면적 2,308㎡)	24,563㎡
여수 베네치아	여주시 오동도로 61-13	'25. 4.14. ('18.6월)	16실	임차	지하1층, 지상1층(1동) (연면적 4,379㎡)	7,074㎡
양평 블룸비스타	양평군 강남로 316	'25. 4. 1. ('13.7월)	10실	임차	지하2층, 지상15층(4동) (연면적 6,283㎡)	31,937㎡
강촌 엘리시안	춘천시 북한강변길 688	'25. 4.14. ('02.12월)	18실	임차	지하1층, 지상15층(1동) (연면적 46,361㎡)	1,023,991㎡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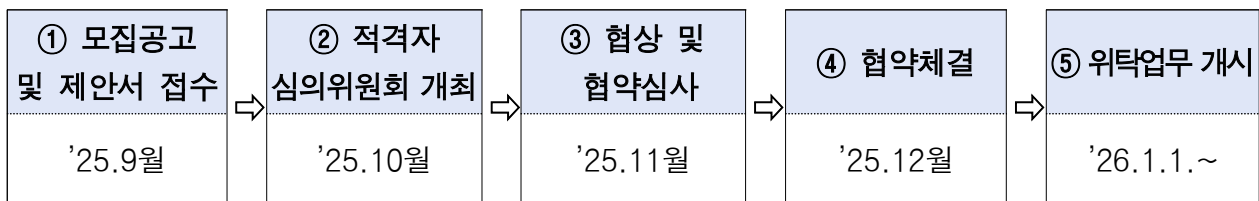
○ 수안보연수원은 개원 이후, 민간위탁만 운영하였고, 현재 업체((주)오브이룸스)가 2014년 6월부터 장기 수탁(11년 6개월)하고 있음.

- 지난 수탁('23.1.1. ~ '25.12.31.)은 재계약에 따른 수탁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는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여 행정국은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6.1.1. ~ '28.12.31.)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올해 10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계약)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수안보연수원 위탁 운영 개요 〉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 위탁사무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
- 위탁기간 : '26.1.1. ~ '28.12.31.(3년) ※ 위탁일정 일부 변경 가능
- 위탁예산(안) : 3,768백만원(충북형 생활임금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참조.

※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75.39점임.

구분	평가명	평가 기간	평가결과	평가기관명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3.1.1.~'25.12.31.	75.39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는 위탁기간 내 1회 실시(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나. 수안연수원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 비용 절감, 단순행정업무 신속 처리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음.¹⁾
- 그러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퇴색, 위탁기관의 통제력 감소, 서비스 품질의 점진적 하락, 투명성 부족,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의 방만한 운영, 서비스 품질 저하, 공공성의 악화, 책임 회피, 통제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²⁾

〈 민간위탁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 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 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 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년 11월, 12면 재인용.

-
- 1) 민간위탁의 추진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년 11월, 4면 참조).
 - 2)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5. 3. 5., 강상원, 토론 3, 41면 참조.

- 행정국은 연수원 운영에 대해 서울시 직원 대상 숙박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의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며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바, 수안보연수원 민간 위탁은 서울시 직원 및 그 가족 대상 연수원 운영관리 사무로 공공성을 요하는 사무가 아니며, 호텔·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한 사무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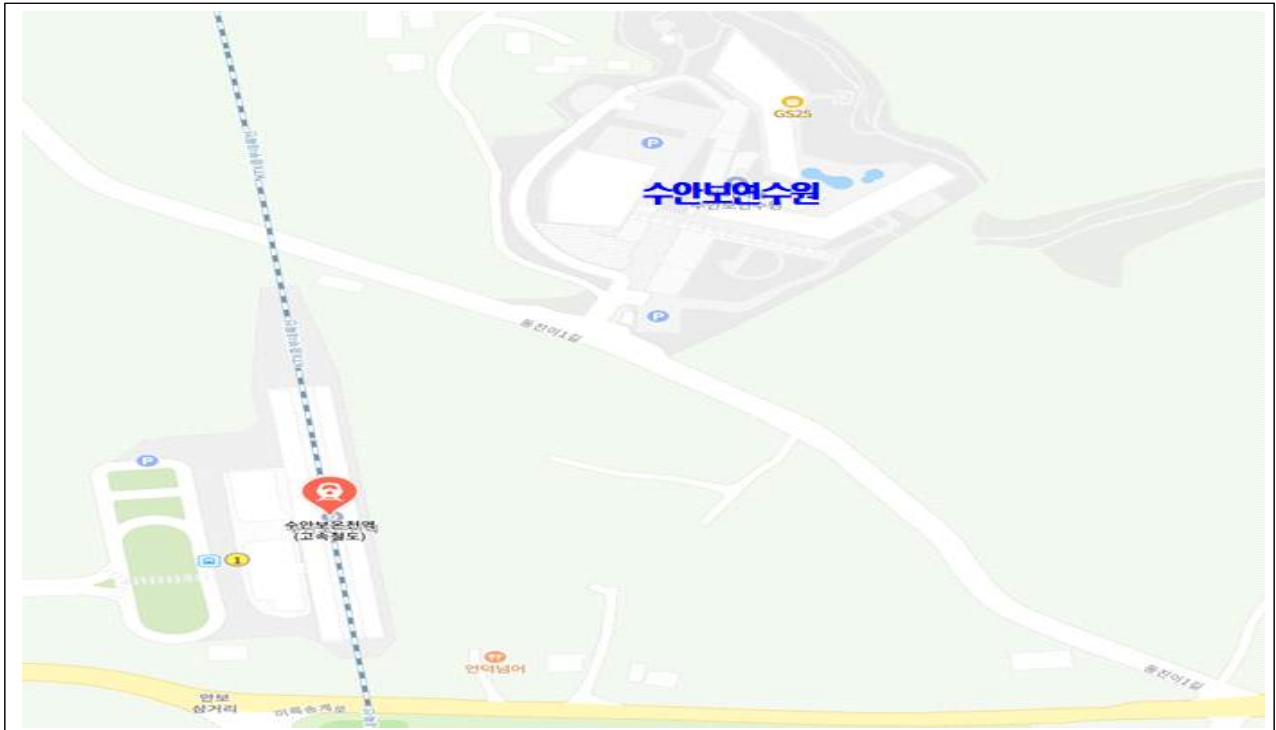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5.7월) : 수안보연수원(적정)

- 다만, 최근 4년간 수안보연수원 객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 평균 객실 이용률이 70% 미만이었으나 2024년 11월 수안보온천역(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수안보온천역에서 수안보연수원 택시로 5분 소요)으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객실 이용률이 77.5%로 상승하였으나, 비수기 객실 이용률은 아직까지 69%(속초 93.4%, 서천 68.2%)로, 비수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홍보를 강화하고, 수안보온천의 특성을 활용한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KTX 수안보온천역과 수안보연수원 〉



〈 최근 4년간 속초·서천·수안보 연수원 객실 이용률 〉

(단위 : %)

구 분		속 초	서 천	수 안 보
'25년 (1~7월)	평균	95.6	75.6	77.5
	성수기	98.9	91.3	95.0
	비수기	93.4	68.2	69.0
'24년	평균	91.1	75.8	69.0
	성수기	93.5	93.7	94.8
	비수기	89.6	65.4	52.6
'23년	평균	88.9	69.9	65.1
	성수기	92.3	85.4	90.5
	비수기	86.7	60.5	48.2
'22년	평균	88.8	69.1	60.4
	성수기	93.8	89.2	38.6
	비수기	85.1	55.2	92.2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또한, 최근 3년간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연수설 시설 잠금장치 등 미설정('22년 상반기),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 사용('22년 하반기), 민간위탁금과 사업수입금 구분하여 관리('23년 상반기), 예산심사액 초과하는 급여와 수당지급에 대해 회수처리('23년 하반기), 경조사비 등 예산 집행시 서울시 관련 규정 준수('24년 상반기) 등 회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국은 수탁 업체의 민간위탁금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

□ '24년도 상·하반기 지도점검

구 분	지도·점검 사항	조치 필요사항
상반기 '24.7.11.(목) ~ 7.12.(금)	▪ 경조사비 등 예산 집행시 서울시 관련 규정 준수	▶ 조치완료 - 경조사비 서울시 관련 규정 직원 설명 및 취업규칙 반영완료
	▪ 예산 집행시 지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자료 작성·관리	▶ 조치완료 - 예산 집행 지출자료 개별 사안별로 구분하여 자료작성 관리중임
하반기 '25. 2.11.(화) ~ 2.12.(수)	▪ (수안보) 체력단련실 이용자 현황 자료 없음 - 이용률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으므로, 시설개선 시 후순위 고려 - 시설 노후화로 민원 발생 多	▶ 조치완료 - 계수기 설치완료, 일·월별 체력단련실 이용자 수 통계 수집 및 분석

□ '23년도 상·하반기 지도점검

구 분	지도·점검 사항	조치 필요사항
상반기 '23.5.11.(목) ~ 5.12.(금)	▪ 민간위탁금과 사업수입금 구분하여 관리 - 민간위탁사업비와 사업 수입금을 구분(별도)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조치완료 - '24년도 위탁금 관리시 재원별 세출 및 수익금 별도관리
	▪ 민간위탁 및 회계 교육 강화 - 수탁법인 사무종사원들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에 대한 규정 숙지 미흡	▶ 조치완료 -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실무 교육이수 완료(e-러닝)
하반기 '24. 1.23.(화) ~ 1.24.(수)	▪ 서울시 예산심사액을 초과하는 급여와 수당지급에 대해 회수처리 - 연봉협상 금액 기준 초과(45,378천원) - 상여금 기준 초과(22,500천원)	▶ 조치완료 - '23년 민간위탁사업 불인정금액 67,880천원 반환 완료('24년 6월)
	▪ 예산 전용 시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진행 - 예산전용, 이월시 주관부서 사전승인 의무화	▶ 조치완료 - 예산 전용, 이월시 주관부서 사전승인 이행 및 절차준수

□ '22년도 상·하반기 지도점검

구 분	지도·점검 사항	조치 필요사항
상반기 '22.6.22.(수) ~ 6.23.(목)	■ 연수원 시설 잠금장치 등 미설정 - 하늘관, 공조실, 순찰함, 승강기 기계실 등 잠금장치 미설정	▶ 조치완료 - 잠금장치 시건 및 점검조치 완료 - 원내 정기순찰 점검 강화 및 점검기록부 작성(전자식)
	■ 우기대비 시설 점검 - 사우나 방수 노후로 인한 바닥 누수 - 지열 히트펌프 노후로 잦은 고장	▶ 조치완료 - 예산 반영을 통한 개보수 및 장비교체
하반기 '23. 1.11.(수) ~ 1.12.(목)	■ 채용심사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 미선임 -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 시 채용심사위 구성하고 외부위원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나 미선임	▶ 조치완료 - '23년 2월 이후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선임 조치
	■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 사용 -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 아니므로 POS 등을 통한 적격 영수증 발급 필요	▶ 조치완료 - 거래처에 양식 개선요구 완료 및 상시 POS 등을 통한 적격 증빙자료 수취 조치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다음으로, 2025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수안보연수원은 조직가치 등 구성원 공유노력 미비, 지속적 이직에 따른 예방, 직원 채용 시 절차 미준수, 사전 통지없는 예산 전용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지적되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5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 결과(수안보연수원) 〉

○ 종합성과평가 결과 : 총 75.39점('25년 2차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일시 : '25년 제6차 종합성과평가 ('25년 7월)
- 실적기간 : '23년 1월 ~ '25년 12월(평가당시 '25.5월)
- 평가점수 : 75.39점 (75점 이상으로 재계약 가능)
- 평가결과

구분	우수사항	개선요청사항	조치결과
내용	- 연수원 직원 전체적 구성 (청년·여성·장애인) - 분기별 균형적 예산집행 실적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연수원 종합이용 만족도 우수	- 조직가치 등 구성원 공유 노력 미비 - 지속적 이직에 따른 예방 - 직원 채용 시 절차 미준수 - 사전 통지없는 예산 전용	- '25년 8월 지도점검 시 해당 사항 공유 및 조치요청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중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재인용.

○ 마지막으로, 행정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서비스 품질,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한 종합적 심사 기준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수안보연수원은 노후시설 교체 공사 계획에 따라 하늘관 객실환경개선 공사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바, 기존 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관 인수인계 절차를 필수화하여, 사업 공백과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행정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명 : 수안보연수원 하늘관 객실환경개선
- 사업기간 : '25. 5. ~ '26. 3.
- 사업내용 : 수안보연수원 하늘관 객실 전체 리모델링
 - (수안보) A형 30실, O형 10실 / (공통) 공용부
- 소요예산(안) : 총2,090,282천원
 - 설계 : 55,000천원 (' 25.5월~7월)
 - 공사 : 2,035,282천원 (' 25.10월~' 26.3월)
 - ※ 공사비는 사고이월을 지양하기 위해 '25년에 50%(3개월분) 편성했으며, '26년에 50%(3개월분)를 추가 편성할 예정
 - ※ '26년 수안보연수원 솔숲관 객실공사(예정) : '26.10월 ~ '27.3월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변 호	3076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나.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객실·식음 및 시설관리 분야 전문 인력과 연수원 운영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건물면적 : 연면적 21,731 m^2 , 지하2층~지상6층, 4개동
- 부지면적 : 59,815 m^2 (대지 : 34,764 m^2 , 임야 : 25,051 m^2)
- 연수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6. 1.1. ~ 2028.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35,430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26년 예산편성안)
- 산출근거 : 충북형 생활임금,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최근 3년간
수안보연수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5. 7. 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 최초위탁(1차) : '08. 6. 1. ~ '11. 5. 31. (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 재 위 탁(2차) : '11. 6. 1. ~ '14. 5. 31. (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 재 위 탁(3차) : '14. 6. 1. ~ '17. 5.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위 탁(4차) : '17. 6. 1. ~ '19.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위 탁(5차) : '20. 1. 1. ~ '22.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공개경쟁)
- ▶ 재 계 약*(6차) : '23. 1. 1. ~ '25. 12. 31. (수탁업체 : (주)오브이름스 / 수의계약)

※ 코로나19 상황 직원만족도 제고 노력, 종합성과평가 우수사례 선정 등 고려하여 재계약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홍경태 (☎ 2133-5783)